

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”를 “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당연직 위원: 4급 이상 관계 공무원

2. 위촉직 위원: 민간 전문가, 대학 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자

③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지역 실정에 맞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”을 “기능이 유사한 성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정기공시시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”를 “정기공시심의 시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필요시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”을 “필요시 관계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둔다”를 “두되, 간사는 소관사항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의 소관사항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예산 기준 재정 공시: 기획예산과

2. 결산 기준 재정 공시: 재무과

제8조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 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.</p> <p>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 위원은 대학교수, 시민단체 대표, 공무원,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당연직 위원: 4급 이상 관계 공무원 2. 위촉직 위원: 민간 전문가, 대학 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자

제3조(위원회 운영) ① (생략)

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2. (생략)

제4조(위원회 통합운영)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① (생략)

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 하고,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③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조(위원회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각 호 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위원회 통합운영) -----

-기능이 유사한 성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
-----.

제5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정기공시 심의시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필요시 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